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감정의뢰인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규현

건 명 : 김보성 소유물건
(2025타경5226)

감정평가서번호 : 경일(대구)17-250224-3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 부동산컨설팅전문기관
(주)경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7길 54-5
☎ (053)752-8900 FAX.(053)756-7562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장태성

장

태성



(주)경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박근호



감정평가액	일억삼천육백육십사만칠천사백오십원정 (₩136,647,45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규현		감정평가 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경매1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보성 (2025타경5226)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5.14	2025.05.13, 2025.05.14	2025.05.23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16.5	토지	216.5	519,000	112,363,500
	건물	95.57	건물	83.49	-	14,200,950
	(제시외 건물)	(77)	건물	77	-	10,083,000
	합계					₩136,647,45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소재 "지보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대상 물건

■ 토지

기호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지목	도로조건	형상 지세	이용상황	용도지역	개별지가 (원/㎡) (2025)	비고
1	지보면 소화리 501-6	50	216.5	대	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상업용	계획관리	300,600	일단지
2	지보면 소화리 501-20	36		대	소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계획관리	330,200	
3	지보면 소화리 502-1	57.5		대	중로한면	부정형 평지	상업용	계획관리	345,500	
4	지보면 소화리 503-4	73		대	소로한면	부정형 평지	상업용	계획관리	141,7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건물

- 기호(가)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1-6 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72)							
구조	토담조 슬레이트지붕							
용도	공부	제1종근린생활시설						
	현황	일반음식점						
연면적(㎡)	50.79	층 수 (지하/지상)	-/2	사 용 승인일	1996.05.10			
기타 참고사항	-							
설비현황	난방 설비	냉방 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설 비	화재탐지 설 비	승강기 설 비	도시가스 설 비	기타 설비
	-	-	-	-	-	-	-	-

- 기호(나)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1-6 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로 172)							
구조	조적조 슬래브지붕							
용도	공부	근린생활시설						
	현황	일반음식점						
연면적(㎡)	32.7	층 수 (지하/지상)	-/1	사 용 승인일	1996.05.10			
기타 참고사항	실측사정							
설비현황	난방 설비	냉방 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설 비	화재탐지 설 비	승강기 설 비	도시가스 설 비	기타 설비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5월 14일로 하였습니다.

■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5월 13일 ~ 2025년 05월 14일 입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5. 기타 참고사항

■ 본건 기호(1~4)토지는 일단의 건부지로 이용중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 일단지로 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기호(나)건물은 제시목록상 면적(44.78㎡)이나 실제 면적(32.7㎡)과 상이하여 감정목적 을 고려하여 실측사정 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ㄱ~ㄹ)은 감정목적 을 고려하여 정상평가하되 기호(ㄴ)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구조, 이용상태로 보아 본건 사용, 수익 및 처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기호(ㄱ, ㄷ, ㄹ)은 기존벽체를 이용한 부합물 및 소규모의 종물로서 본건 사용, 수익 및 처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건 기호(ㄱ~ㄹ)은 경매진행시 일괄경매여부 및 소유권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시 외건물 감안시 명세표 비교란에 별도가격을 부기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 및 건물은 공부상 소유자가 '김시한'氏(개명전)로 되어 있는 바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Ⅱ.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조, 용재, 시공 및 관리상태, 용도, 현상, 부대설비 및 그 밖의 비용성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건물의 경우 거래사례 포착이나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감정평가액 산출

1. 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산식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1) 비교표준지의 선정 (2025.01.01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구 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가	지보면 소화리 504-6	370.9	대	계획관리	상업기타	소로한면	세장형 평지	300,000

※ 도로저축 약 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시점수정

본건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으며, 기준시점 당시 해당월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최종 발표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 하였습니다.

기 간	지가변동률(%)	산 식
2025.01.01 ~ 2025.05.14 (경상북도 예천군 계획관리지역)	0.582 (1.00582)	$(1 + 0.00375) \times (1 + 0.00145 \times 44/31)$ = 1.00582

3)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동등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개별요인 비교

■ 상업지대

[본건 기호(1~4) / 표준지 기호(가)]-일단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 교 치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등	0.98	형상에서 열세합니다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2	표준지가 일부 도로저측으로 우세합니다
		용적제한, 고도제한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요인의 보정

① 그 밖의 요인 보정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 " 2002두5054 (2003.7.25선고)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교통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인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하였습니다.

$$\text{산식}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 평가}) \text{ 사례가격}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text{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한 자료

▷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기준시점	평가 목적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1	지보면 마전리 175-6	361	대	계획관리 상업용	사다리 소로한면	2022.07.26	법원경매	478,000 (305,500)
2	지보면 마전리 141-9	225	대	계획관리 상업용	부정형 소로한면	2023.09.15	자산재평가	528,000 (332,500)

※ 사례도면은 후첨 " 상세위치도 " 참조

※ 출처: 감정평가정보(KAPA HUB PLUS)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실거래가액 (원)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A	지보면 소화리 912-31	107.2	대	계획관리 단독주택	사다리 소로한면	2022.03.03	48,081,360	448,000 (187,400)
비 고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 토지가격 : 48,081,360원 / 107.2㎡ ≒ 449,000원/㎡							
B	지보면 소화리 402	310	대	계획관리 단독주택	사다리 소로한면	2025.02.13	150,000,000	373,000 (31,700)
비 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건물개요 : 경량철골구조(사용승인일 : 2017.09.25), 면적 : 89.28㎡ 건물단가 : 500,000원/㎡ × 23/30 ≒ 383,000원/㎡ 건물가격 : 383,000원/㎡ × 89.28㎡ ≒ 34,194,240원 토지가격 : 150,000,000원 - 34,194,240원 ≒ 115,805,760원 토지단가 : 115,805,760원 / 310㎡ ≒ 373,000원/㎡							

※ 사례도면은 후첨 " 상세위치도 " 참조.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 인근 지가수준

위 치	도로조건	지가수준	비 고
본건 인근	소로변	480,000~550,000원/㎡	-

위치, 형상, 접근성, 환경 등에 따라 지가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출 및 결정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지가수준, 경매시장 추이, 평가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본건 평가시 적용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합니다.

■ 비교표준지 (가)

사례기준 표준지 평가	사례가격 ^{※1}	시점수정 ^{※2}	지역요인 ^{※3}	개별요인 ^{※4}	산출단가(A)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478,000	1.03489	1.000	1.050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B) (원/㎡)	1.721	1.72
		300,000	1.00582	-	-		

※1 사례선택

표준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이용상황 등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기 "평가사례(1)" 을 비교사례로 선택하였습니다.

※2 시점수정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2.07.26 ~ 2025.05.14 (경상북도 예천군 계획관리지역)	3.489	1.03489	2025년 3월 연장적용

※3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등합니다. (1.000)

※4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치 (상업지대)						격차율
가로	접근	환경(자연)	획지	행정	기타	
1.00	1.05	1.00	1.00	1.00	1.00	1.050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에서 우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기 호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1~4	300,000	1.00582	1.000	1.000	1.72	519,003	519,000	일단지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면 적(㎡)	단 가(원/㎡)	시산가액(원)	비 고
1~4	216.5	519,000	112,363,500	일단지
합 계	180	-	112,363,5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

산식 :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1)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①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및 사유

본건과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상기 "거래사례(A)"를 "기호(1 ~ 4)"의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② 거래사례 선정 내역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실거래가액 (원)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A	지보면 소화리 912-31	107.2	대	계획관리 단독주택	사다리 소로한면	2022.03.03	48,081,360	448,000 (187,400)
비 고	- 토지만의 거래사례입니다. - 토지가격 : 48,081,360원 / 107.2㎡ ≒ 449,000원/㎡							

※ 사례도면은 후첨 " 상세위치도 " 참조.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사례가액을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상기 사례의 경우 사정보정요인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0)

3) 시점수정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2.03.03 ~ 2025.05.14 (경상북도 예천군 계획관리지역)	4.213	1.04213	2025년 3월 연장적용

4) 가치형성요인 비교

① 지역요인 비교

사례와 본건 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동등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② 개별요인 비교

■ 상업지대

[본건 기호(1~4) / 사례 기호(A)]-일단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 교 치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등	1.15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에서 우세합니다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등	0.98	형상에서 열세합니다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용적제한, 고도제한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비교치			1.12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기 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1~4	448,000	1.000	1.04213	1.000	1.127	526,167	526,000	일단지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 고
1~4	216.5	526,000	113,879,000	일단지
합 계	180	-	113,879,000	-

7) 합리성 검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12,363,500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13,879,000원

상기와 같이 산출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상호간에 유사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토지의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해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112,363,5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건물의 감정평가액 산출

(1) 대상 건물

- 기호(가)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1-6 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72)							
구조	토담조 슬레이트지붕							
용도	공부	제1종근린생활시설						
	현황	일반음식점						
연면적(㎡)	50.79	층 수 (지하/지상)	-/2	사 용 승인일	1996.05.10			
기타 참고사항	-							
설비현황	난방 설비	냉방 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설 비	화재탐지 설 비	승강기 설 비	도시가스 설 비	기타 설비
	-	-	-	-	-	-	-	-

- 기호(나)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1-6 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로 172)							
구조	조적조 슬래브지붕							
용도	공부	근린생활시설						
	현황	일반음식점						
연면적(㎡)	32.7	층 수 (지하/지상)	-/1	사 용 승인일	1996.05.10			
기타 참고사항	실측사정							
설비현황	난방 설비	냉방 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 설 비	화재탐지 설 비	승강기 설 비	도시가스 설 비	기타 설비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재조달원가

표준단가는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을 참조하되 본건물의 신축년도, 건축자재, 동 . 유사 규모 및 용도의 신축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향 및 본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 하였습니다.

1) 신축단가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한국부동산연구원(KRERI) 발행: 2024년도)

분류번호	용도	구 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연수
03-01-04-09	점포 및 상가	블록조/평지붕	5	889,000	45 (40~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재조달원가의 결정

기호	층	표준단가 (원/㎡)	보정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내용연수	비 고
가	1층	600,000	-	600,000	40	-
나	1층	650,000	-	650,000	40	-
특이사항		-				

(3)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의 결정

감가수정은 건물의 물리적으로 존속가능한 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기능적·경제적 효용가치의 지속가능한 연한인 경제적 내용연수, 실제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정액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기호	층	재조달원가 (원/㎡)	사용승인일	내용연수	잔존연수	적용단가 (원/㎡)	비 고
가	1층	600,000	1996.05.10	40	11	165,000	-
나	1층	650,000		40	11	178,000	-

(4) 건물의 감정평가액

기호	층	면 적(㎡)	단 가(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가	1층	50.79	165,000	8,380,350	-
나	1층	32.7	178,000	5,820,600	실측사정
합 계				14,200,9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112,363,500	-
건 물	14,200,950	-
제시외건물	10,083,000	
합 계	136,647,450	-

토지 ·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1-6	대	계획관리지역	50	216.5	519,000	112,363,500	일단지 제시외건물 감안시 :78,654,450
2	"	501-20	대	계획관리지역	36				
3	"	502-1	대	계획관리지역	57.5				
4	"	503-4	대	계획관리지역	73				
가	" [도로명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72	위 4지상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이)미 용원)	토담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50.79	50.79	165,000	8,380,350	600,000 x 11/40 실제 '강판지붕'
나	"	"	근린생활 시설 (일반 음식점)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44.78	32.7	178,000	5,820,600	650,000 x 11/40 실측사정
	소 계							₩126,564,450	
㉠	동 소	위4지상	다용도실	기존벽체를 이용한 강판지붕 단층	(25.5)	25.5	82,000	2,091,000	300,000 x 11/40
㉡	동 소	"	주택 등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36.5)	36.5	192,000	7,008,000	700,000 x 11/40
㉢	동 소	"	참고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6)	6	20,000	120,000	120,000 x 5/30

토지 ·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㉔	동 소	"	화장실	조립식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9)	9	96,000	864,000	350,000 x 11/40
	소 계							₩10,083,000	
	합 계							₩136,647,450.-	
				이 하		여	백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소재 '지보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면소재지내 학교, 기존주택지 및 노선상가지대로 형성되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여타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지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북동측 폭 약 2~3미터의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소화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7-28)(지보중학교)<교육환경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소화취락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7-28)(지보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소화취락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7-28)(지보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4) :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소화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7-28)(지보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ㄴ)은 구조, 면적 및 이용상태로 보아 본건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가)토담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페인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바 닷 : 장판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입니다.

(나)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타일, 페인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바 닷 : 장판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입니다.

2. 이용상태

(가)일반음식점 등

(나)일반음식점 등

3. 설비내역

(나)급배수시설 등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ㄱ, ㄷ, ㄹ)은 기존벽체를 이용한 부합물 및 소규모의 종물로서 본건 사용, 수익 및 처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공부와의 차이

- (1)본건 기호(가)건물은 실제 '강판지붕'입니다.
- (2)본건 기호(나)건물은 제시목록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하여 감정목적에 고려하여 실측사정 평가하였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

광역 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일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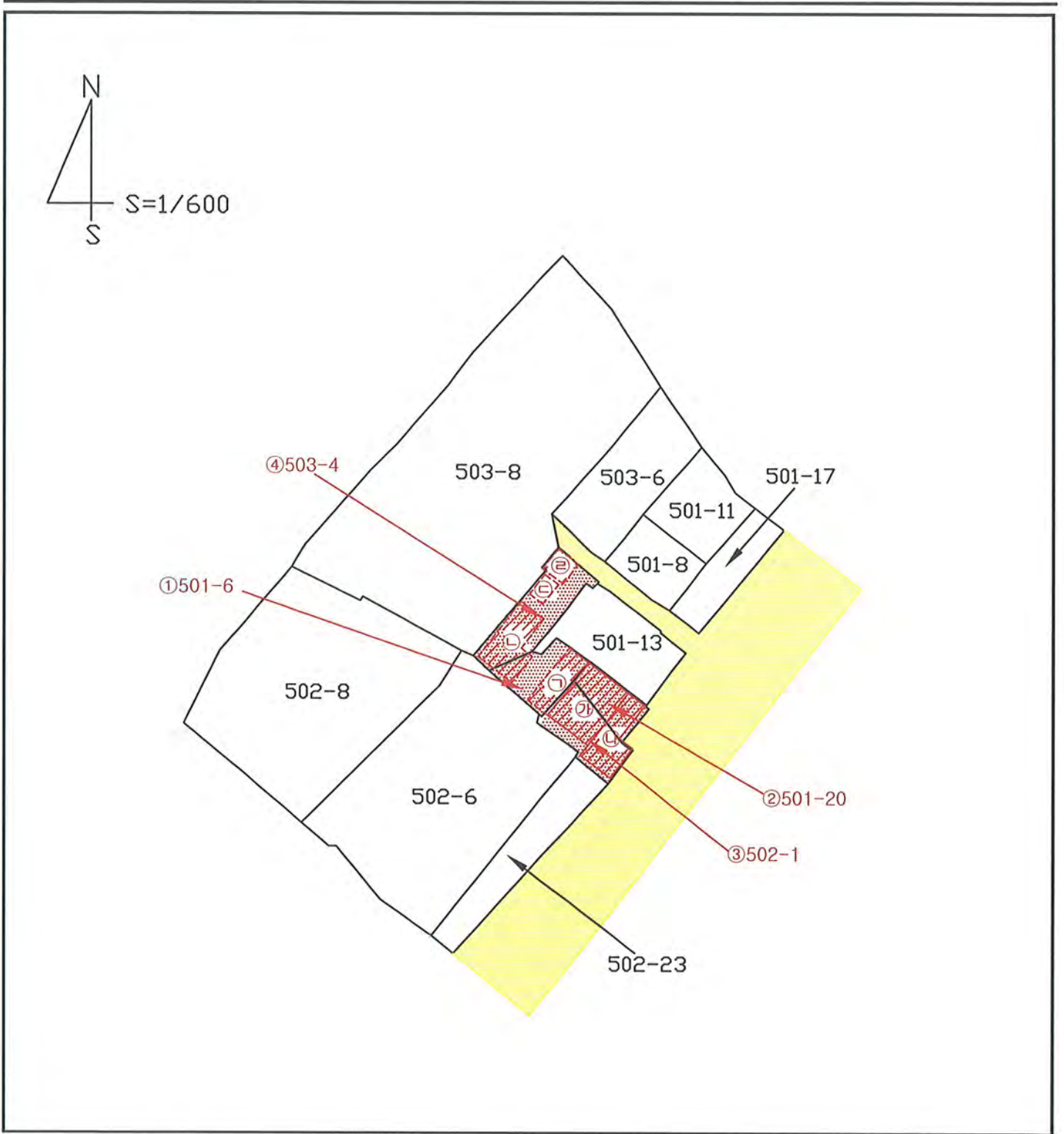
상세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1-6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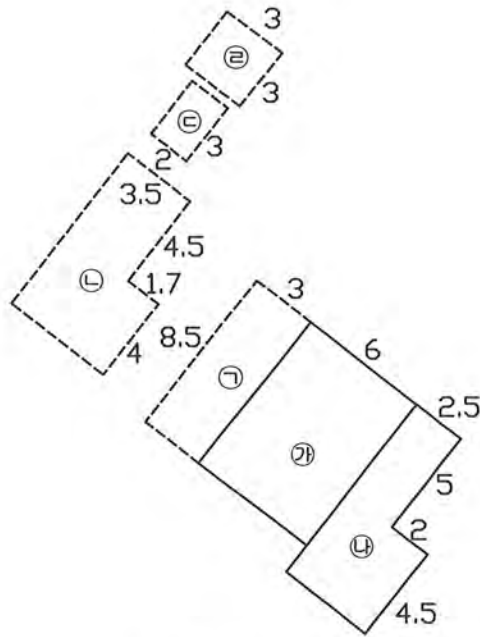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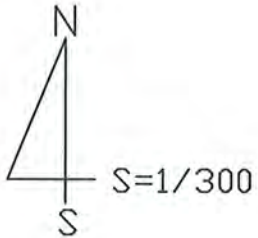


지적 및 건물개황도



번 례	적색 :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등기)
	황색 : 도로선		평가건물 2층		평가제외건물(미등기)
	적색실선 :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3층 이상		지하층

지적 및 건물개황도



평가 건물

- ㉑ $6 \times 8.5 \approx 51 \text{ m}^2$
- ㉔ $(4.5 \times 4.5) + (5 \times 2.5) \approx 32.7 \text{ m}^2$ (실측사정)

제시 외 건물

- ㉑ 기존벽체를 이용한 강판지붕 단층 (다용도실 등, 약 25.5 m^2)
- ㉒ 조적조 스투트지붕 단층 (주택 등, 약 36.5 m^2)
- ㉓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 6 m^2)
- ㉔ 조립식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약 9 m^2)

범 례	적색 :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등기)
	황색 : 도로선		평가건물 2층		평가제외건물(미등기)
	적색실선 : 계획도로선		평가건물 3층 이상		지하층

사 진 용 지



본건 부근-남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기호(가)



본건 기호(가)

사 진 용 지



본건 기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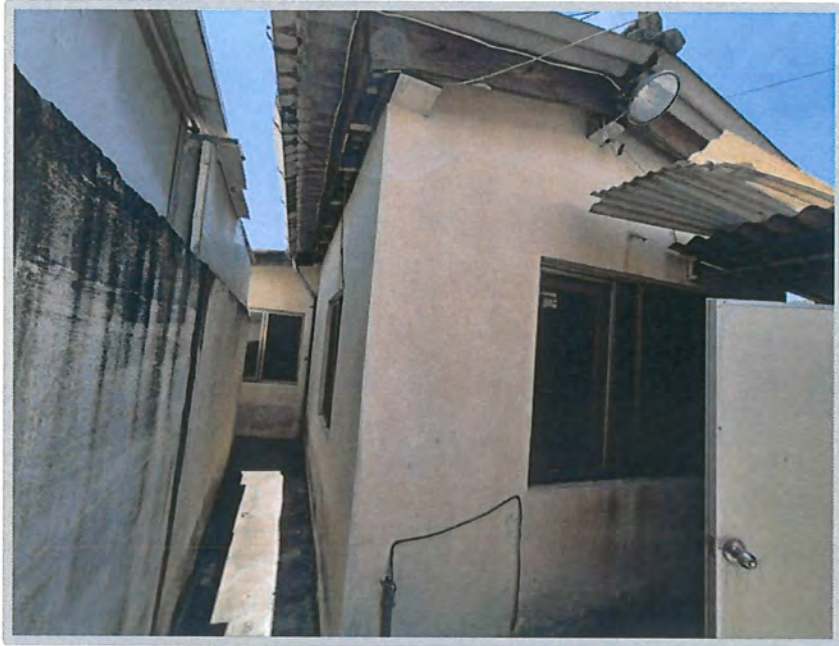


본건 기호(나)

사 진 용 지



제시외건물(ㄱ)



제시외건물(ㄴ)

사 진 용 지



제시외건물(ㄷ)



제시외건물(ㄷ)